

의안번호	제2830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8. 27.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2830호
----------	--------

제출연월일: 2024. 8. 27.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2024. 12월 준공되는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을 위해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 선정 제반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기능 강화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종사자	정원	시설현황	비고
신규 위탁	고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1	85m ²	2명	20명	놀이공간, 활동실 사무공간, 조리실 등	

나.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간(2025. 1. ~ 2029. 12.)

다. 위탁내용: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관리·운영 전반

라.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마. 소요예산: 94,511 천원

- 인건비: 80,711천 원(시설장 1명, 돌봄선생님 1명)
- 운영비: 13,800천 원(관리비 및 프로그램비 등)

바. 선정방법: 공개경쟁

- 공개모집 → 서류심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등 심의
- 최고·최저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최다득점 위탁기관

※ 70점 미만시 재공고 실시, 동점 경우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수탁자의 적격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사. 위탁조건

- 수탁기관은 아동복지법 및 기타 관계법령,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 수탁기관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서에 의함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초등돌봄은 운영시간 및 돌봄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보호자)의 욕구 및 선호도가 다양하여 사업에 대한 민간의 유연한 대처 필요
- 민간 위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필요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위탁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

다.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해당 사무는 비영리사무로 돌봄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민간이 가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이 가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실현, 틈새 돌봄 기능 강화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서비스 이용률, 예산의 집행률,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 성과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예·결산 정보공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5. 추진일정

가. 2024. 8.: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및 운영 위탁체
선정계획 수립

나. 2024. 8.: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다. 2024. 10.: 위탁체 모집 공고(20일간) 및 신청서 접수

라. 2024. 11.: 서류심사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위탁체 선정 공고 및 통지

마. 2024. 12.: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관련법령 1부.

등록번호	교육청소년과-23385
등록일자	2024. 8. 26.
결재일자	2024. 8. 26.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보육돌봄 담당	교육청소년과장	행정복지 국장	부군수	군수
최미혜	김민정	천미옥	최낙창	박성준	2024. 8. 26. 이상근
협조자	행정담당 인사담당	김민정 박남숙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최대석 조형래	

고성군 새롭게 군민이 함께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및 수탁자 선정 계획(안)

개 요

- (위탁대상)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 (위 치)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1
- (위탁기간) 위탁한날로부터 5년간
-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소요예산) 94,511천 원 정도
- (수탁자 심사 및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추진방법 및 절차) 공개모집
 - 공개모집 공고 → 서류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고 성 군
[교육청소년과]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및 수탁자 선정 계획(안)

- 2024. 12월 준공되는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을 위해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 선정 제반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기능 강화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II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확보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적격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결정
-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체의 사업추진능력 고려·선정

III 위탁개요

위탁 대상: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 개소일(예정): 2025. 1. ※ 준공예정일: 2024. 12.

시설명	위치	면적	종사자	정원	시설현황	비고
고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1	85m ²	2명 (센터장1, 돌봄선생님 1)	20명	놀이공간, 활동실, 사무공간, 조리실 등	아동 이용 시설

○ 소요예산: 94,511천 원 정도 ※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 내시 기준

(단위: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계	인건비	종사자수당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명절 휴가비		
94,511	80,711	73,260	5,200	720	1,531	13,800	

- (인 건 비) 73,260천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 센터장 3,166천원×12개월, 돌봄선생님 2,939천원×12개월
- (종사자수당) 5,200천원(도비 30%, 군비 70%)
 - 종사자수당 200천원×2명×12개월+ 명절수당 100천원×2명×2회
- (자격수당) 720천원(군비 100%, 30천원×2명×12개월)
- (명절휴가비) 1,531천원(도비 30%, 군비 70%)
 - 센터장 2,647천원×15%×2회 돌봄선생님 2,457천원×15%×2회
- (운 영 비) 1,000천원×12개월(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 (자체운영비) 150천원×12개월(군비 100%)

위탁 사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함

위탁 기간: 2025. 1. ~ 2029. 12.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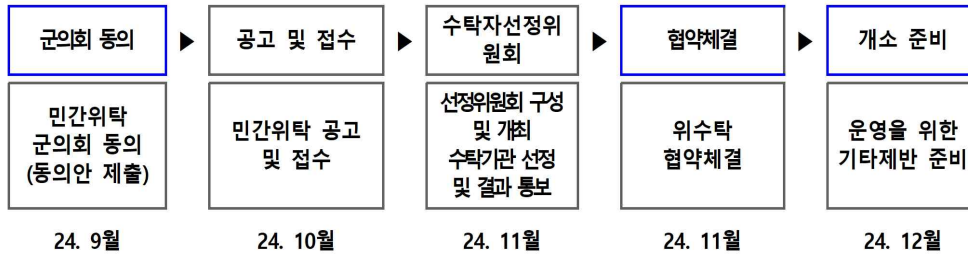
위탁운영 조건

- 사업비: 94,511천 원 정도
 - 사업비의 보조는 국도비 지원 기준 및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보조금 외 운영비 및 위탁 기간 중 추가되는 인건비는 수탁자 부담
- 아동복지법 및 기타 관계법령,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 수탁기관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서에 의함

위탁 심사: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결정

문서관리카드교육청소년과-23385 3/6

□ 위탁 추진절차



※ 추후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IV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4. 9월 임시회

□ 모집공고: 2024. 10월

- 공고(안): [붙임 1-1]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공보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법인 주사무소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재
 - ※ 공고 2회까지 고성군 소재 법인의 신청 및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회차부터 신청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함
 -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문서관리카드교육청소년과-23385 4/6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집 접수

- 접수장소: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
- 접수기간: 접수개시일로부터 7일 이상
-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 [붙임1-2]
 - 제출부수 서면심사(10권), 면접심사
 - ※ 평일 9:00~18:00까지 접수하며, 평일 12:00~13: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기타사항: 위탁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 위탁체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행

□ 심사 및 선정: 2024. 11월

- 선정심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 심사방법: 심사표에 의거 평가
 - 심사항목

구분	계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비고
배점	100	30	50	20	

- 세부심사기준: [붙임 2]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 ※ 면접은 운영계획 등 설명(7분 이내)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문서관리카드교육청소년과-23385 5/6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접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최고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선정
- 신청자 모두 심사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심사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수탁자의 적격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결과 통지 및 위탁계약: 2024. 11월

- 선정결과 통보: 군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공고
- 위탁계약 체결
 - 주요 내용: 위탁 목적,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탁계약 체결 후 공증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 제출
 - 고득점자가 위탁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로 결정

V

행정사항

- 2024. 8.: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및 위탁체 선정계획 수립
- 2024. 8.: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 2024. 9.: 위탁체 모집 공고(20일간) 및 신청서 접수
- 2024. 10.: 서류심사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위탁체 선정 공고 및 통지
- 2024. 11.: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식 1부.
3.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 1부. 끝.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로 정한다.